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8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 송갑석 · 이용빈 · 민형배

전용기 · 최인호 · 이정문

임종성 · 이규민 · 정춘숙

김경만 의원(10인)

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적용(안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하고 있으나, 관행상 적용되어 온 「관세법」상 입출항·하역 절차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하고,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게 유리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 합리화(안 제12조제8호)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해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14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0 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38조제4항 신설)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종 외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신고, 외국물품 등의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의 반출신고,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의 처분신고 및 외국물품 등의 멸실·분실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공항 · 항만 물류산업 또는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근거 마련(안 제38조제6항 신설)

입주기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화물단위를 유지한 채 보관·사용하지 않고 개인 구매단위로 분할·병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현행 제70조 제2항제7호 삭제, 안 제7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외국물품 등에 대한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후 그 적재기간을 넘겨 해당 외국물품 등을 적재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법률 제 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설치되어 있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를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중 "해지"를 "해지(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를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공항·항만 물류산업 또는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하려는 자 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임대료 감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대료 감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29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입주기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제29조제4항"을 각각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제29조제4항제1호"를 "제29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60조제5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37조제

2항제5호 및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u>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u>당하는</u>
<u>있지 아니한</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
	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u><신 설></u>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
	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
	<u>한 경우</u>
<u> <신 설></u>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
	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u>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u>
	<u>\$</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입주계약) ① (생 략)	제11조(입주계약) ① (현행과 같
	승)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	2
결할 때에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제1항제1호에 따른 <u>국내산</u> 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 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 3. (생략)
- ③ ④ (생 략)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 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 결할 수 없다.
 - 1. ~ 7. (생략)
 -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u>해지</u>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u>.</u>
1. (현행과 같음)
2
국내산
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
릭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
산업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결격사유)
<u>.</u>
· 1. ~ 7. (현행과 같음)
8
<u>해지(이 조 제</u> 1호에 레타워서 이즈케아시
1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
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u>수리하여야 한다.</u>

<신 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생략)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 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 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 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 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가공・조립 · 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 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 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현 행과 같음) 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 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 ③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 여 공항・항만 물류산업 또는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 <신 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생 략) <신 설>

<u>②</u> ~ <u>④</u> (생 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 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 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 는 아니 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 권자의 임대료 감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 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임대료 감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 ① (현행과 같음)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 ③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 <u>⑥</u> 제5항-----

-----.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 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②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국외로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생 략)

<u><신 설></u>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자유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①
<u>제29조제5항</u>
②
<u>제3항</u>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 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 치(藏置)된 물품(제29조제3항제 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것은 제외 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 조의2·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 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 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 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제
<u>2호</u>
2

1. ~ 4. (생 략) <신 설>

③ (생략)

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 ③ 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략)

<신 설>

-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 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 1. 제29조제4항-----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

- 1. ~ 4. (현행과 같음)
-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 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⑥ 입주기업체는 관세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물 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 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식 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세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 300 - 3 - 3

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소 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 2. <u>제29조제4항</u>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 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 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 출한 경우
- 3. (생략)
-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 7. (생략)

②·③ (생 략)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문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 준) 제29조제4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 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 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2. <u>제29조제5항</u>
3. (현행과 같음) 4
_{제29조제5항}
5. ~ 7. (현행과 같음)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
준) <u>제29조제5항제1호</u>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	
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7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	
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1. <u>제29조제4항</u>
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	
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	
·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②
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	
조・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처벌한다.	<u>.</u>
1. <u>제29</u> 조제 <u>4항</u> 에 따른 수입신고	 1. <u>제29조제5항</u>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	
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	
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	
출한 자	
2. 제29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하	 2. 제29조제6항
	- ' '

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
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략)
 - 5. <u>제38조제4항</u>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6. (생략)
-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2. ~ 7. (생 략)
-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략)
 - 7.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자

- 8. ~ 11.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u>제30조제2항</u>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 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 4. (생략)

④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	-----	------	-----

- (3) -----
- 1. (현행과 같음)
- 2. <u>제30조제3항</u>-----
-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 3. 4.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